

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

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노후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이 제한됩니다.

◆ 대 상

- 2005년 이전 등록, 차량 총중량 2.5톤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
- 종합검사 불합격 자동차

◆ 시행시기 : 2019. 1. 1. 부터

◆ 단속방법 : 주요도로 CCTV 및 현장단속

◆ 위반차량 조치 : 1차 경고,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 (최대 200만원까지)

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**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**

[대기환경보전법 58조 및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]

◎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혜택

○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, 정밀검사 3년 면제

※ 검사면제는 장치부착후 2개월±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

◎ 저공해 조치(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엔진 개조)란 ?

○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, p-DPF) 부착

-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·산화시키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

○ 저공해(LPG)엔진 개조

- 매연이 배출되는 경유연료 엔진을 LPG연료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

◎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원

○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시 소요비용의 83~93% 지원

 **문인처**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☎ 1544-0907, 조기폐차 ☎ 1577-7121

☞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(☎ 032-440-3550)

경유차량 등의 저감사업별 지원 금액(천원)

□ 매연저감장치(DPF 등)부착

구분	보조금	자기부담금		유지관리비	대상
		금액	부담율(%)		
DPF(1종)	3,268~9,277	373~1,031	10.0~12.5	462	총중량 2.5톤 이상 중저공해조치 명령 대상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
p-DPF(2종)	1,429~2,072	215~351	12.5~14.5	12	
LPG 엔진개조	3,858~3,965	298~405	7.0~9.5	47	

□ PM·NOx 동시저감장치 부착

구분	계	보조금	자기부담금 (10%)	유지관리비	대상
일체형 A	13,629	12,266	5,370	2,262	'02~'07년식 배기량 5,800~17,000cc, 출력 240~460PS 경유차량
일체형 B	15,196	13,676	5,370	2,262	
분리형	6,000	5,400	600	1,332	

□ 건설기계 DPF 부착

구분	계	보조금	자기부담금 (10%)	유지관리비	대상
대형	10,388	9,349	1,039	462	총중량 2.5톤이상 중 '05.12.31 이전 제작된 차량
중형	7,400	6,660	740	462	

□ 건설기계 엔진교체

구분	지게차			굴삭기	
	2톤 ¹⁾	4톤	6톤	5톤 ²⁾	14톤
장치가격	12,858	20,994	23,288	19,211	29,727
보조금	11,572	18,265	20,261	16,714	25,268
자기부담금 (부담율)	1,286 (10.0%)	2,729 (13.0%)	3,037 (13.0%)	2,497 (13.0%)	4,459 (15.0%)

1)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(2톤)의 보조금은 10,026천원(자부담금 1,114천원, 10%)

2)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(5톤)의 보조금은 13,168천원(자부담금 1,968천원, 13.0%)

□ 조기폐차

구분	'00년 12. 31 이전 제작된 차량		'01. 1. 1~ '05. 12. 31. 제작된 차량	
	상한액	지원율	상한액	지원율
3.5톤 미만			1,650	100%
3.5톤 이상 6,000cc 이하	없음	100%	4,400	
3.5톤 이상 6,000cc 초과			7,700	



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☎ 1544-0907, 조기폐차 ☎ 1577-7121

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(032-440-3550)